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재갑 (고용노동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범위 확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의 탈퇴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601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사용 범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범위 등 (안 제46조제4항제4호 신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직전년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범위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

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 범위(안 제55조의4 신설)

사업주 등이 해당 회계연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의 탈퇴 사유 및 절차와 방법 등(안 제55조의5 신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는 도급인·수급인 관계의 종료, 경영상 이유에 의해 공동기금협회의 출연금액 결정에도 불구하고 총 3회에 걸쳐 출연을 중단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탈퇴 신청에 의한 방법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협회의 협의·결정을 거쳐 탈퇴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 및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라 한다)

제30조의 제목“(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등)”을 “(기금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등)”으로 한다.

제46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62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의 경우에는 기본재산 총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이 경우 기금법인은 전단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제6호의2는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제55조의2제1호 중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을 “공동기금법인”으로 한다.

제55조의4를 제55조의6으로 하고, 제55조의4와 제5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4(기본재산의 공동기금사업에의 사용) 법 제86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사업주 등이 공동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공동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에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공동기금협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공동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제55조의5(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사유 및 절차) ① 법 제86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이 설립하거나 동일한 도급인의 수급인 간에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의 경우 도급인·수급인 관계의 종료
2. 사업주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동기금협회의 출연금액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주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출연을 3회 중단한 경우
 - 가. 공동기금협회의 출연금액 결정에 따라 출연하여야 하는 기간 말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호에서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 재고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직전 연도(이하 이 호에서 “직전연도”라 한다)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 나.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다.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3.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동기금협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동기금법인에 탈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탈퇴를 신청한 경우 공동기금협회는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협의·결정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 협의·결정이 없는 경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탈퇴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55조의6(중전의 제55조의4) 중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를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66조의2제10호 중 “제86조의11”를 “제86조의15”로, “기금법인”을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제86조의11”을 “제86조의15”로 한다.

별표 제2호하목부터 너목까지, 머목부터 서목까지의 위반행위란 중 “제86조의11”을 각각 “제86조의15”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7조 관련)

1. 일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근로복지를 위하여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 제99조제2항	300만원
나. 법 제35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제4항제1호	80만원
다.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제4항제1호	80만원
라.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제4항제1호	100만원

마. 법 제35조제7항을 위반하여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1)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2) 10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제4항제1호	60만원 60만원
바. 삭제 <2016.1.19.> 사. 삭제 <2016.1.19.>		
아.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해당 계정 처리방법에 따라 구분·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제4항제2호	80만원
자.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리사주를 예탁한 경우	법 제99조제4항제3호	60만원
차. 법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탁된 우리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법 제99조제4항제4호	80만원
카. 법 제4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99조제4항제5호	100만원
타.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산한 경우	법 제99조제4항제6호	100만원
파.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해산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법 제99조제4항제6호	60만원
하. 법 제57조(법 제86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복지기금협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제3항제1호	100만원
거. 법 제65조(법 제86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제3항제1호	100만원

너. 법 제69조(법 제86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9조제1항	300만원
더. 법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9조제4항제7호	60만원
러. 법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제4항제7호	80만원
머. 법 제93조제1항제3호(법 제86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9조제3항제2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 거짓 보고를 한 경우		150만원
버. 법 제93조제1항제3호(법 제86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항에 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제3항제2호	150만원
서. 법 제93조제1항제3호(법 제86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항에 관한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99조제3항제2호	150만원
어. 법 제93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9조제4항제8호	60만원
저. 법 제9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99조제4항제8호	60만원
처.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제4항제8호	60만원
커.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99조제4항제8호	80만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조합차입)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u>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u> 6. (생략) ② (생략)	제21조(조합차입)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 및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라 한다)</u>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u>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등</u>) ① ~ ④ (생략)	제30조(<u>기금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등</u>)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① ~ ③ (생략) ④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제5항·제6항에 따른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 3. (생략)

<신설>

⑤ ~ ⑦ (생략)

제55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법 제8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라 한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2. (생략)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62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의 경우에는 기본재산 총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이 경우 기금법인은 전단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제6호의2는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

1. 공동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2. (현행과 같음)

제55조의4(기본재산의 공동기금 사업에의 사용) 법 제86조의6제

<신 설>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사업주 등이 공동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공동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 금액에 공동근로복지기금협회의(이하 “공동기금협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공동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90을 초과할 없다.

제55조의5(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사유 및 절차) ① 법 제86조의8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이 설립하거나 동일한 도급인의 수급인 간에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의 경우 도급인·수급인 관계의 종료

2. 사업주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동기금협회의 출연금액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주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재산 출연을 3회

중단한 경우

가. 공동기금협회의 출연금

액 결정에 따라 출연하여
야 하는 기간말일이 속하
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호에서 “기준달”이라 한
다) 말일의 해당 사업 재고
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직
전 연도(이하 이 호에서
“직전연도”라 한다)의 월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
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나.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다.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3.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

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
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
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
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신 설>

<신 설>

제55조의4(준용) 공동근로복지기
금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44
조까지, 제46조부터 제52조까
지,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
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공동기금법인
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동기금협회의 협의·결정
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이 경
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동
기금법인에 탈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탈퇴
를 신청한 경우 공동기금협회
는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협의·결정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 협의·결정이 없는 경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탈퇴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사업
주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55조의6(준용) -----

-----제46조부터 제52조까
지, 제53조(제2항은 제외한다)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typical of primary-ruled notebook paper.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제6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

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 -----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법 제62조(법 <u>제86조의11</u>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u>기금법인</u>의 사업에 관한 사무	10. -----<u>제86조의15</u>----- -----<u>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u>-----
11. (생략)	11. (현행과 같음)
12. 법 제93조(법 <u>제86조의11</u>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한 사무	12. -----<u>제86조의15</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연 락 처	(044) 202 - 7559